

한국과 미국의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비교

Comparis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between Korea and the U.S.

이인희*, 고수형**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제주대학교 대학원**

In-Hoi Lee(tomlee@jejunu.ac.kr)*, Su-Hyung Ko(kshyung@korea.kr)**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비교하여 향후에 전개될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교육자치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생성 배경과 원리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잠재적 교육자원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원리의 하나인 주민통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 중심어 : | 지방교육자치 | 지방자치 | 주민통제 | 전문적 관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atively analyze local educational autonomy (LEA)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investigate the new directions that Korea can follow. To do so, a comparative analysis was employed to study the background, development process, principles and structural elements of the respective LEAs.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e of the Korean LEA should be selected and established. Second, the LEA principles should be discussed again and decided anew to accomplish the goals of the LEA by mobilizing all local potential resources. Third, 'control by people,' one of essential LEA principle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 keyword : | Local Educational Autonomy | Local Autonomy | Control by People | Management by Professionals |

I.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제정 「교육법」에 근거하여 1952년부터 시작되어,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그러나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부활되어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끊임없는 변화를 겪어 왔다. 박삼철[1]은 1991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된 지방교육자치가 이제 안착의 단

계로 접어들었고, 특히 2010년 6·2 동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직선제로 지방교육자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향은 커다란 쟁점이었고 그 속에서 파생된 진통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구조 역시 2014년에 또 다시 변화를 예정한 잠정적 상태에 머물고 있어[2] 향후 지방교육자치의 또 다른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접수일자 : 2014년 02월 20일

수정일자 : 2014년 03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4월 18일

교신저자 : 이인희, e-mail : tomlee@jejunu.ac.kr

교육자치제도란 교육기관이 행하는 자치적 행정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오랫동안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왔다. 즉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사무장격으로 또는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3]이다.

우선 이러한 개념 정의는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일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분권은 그 정도와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4]. 이명박정부는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학교자율화 정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권한은 지방수준으로 위임·이양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육의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국가수준의 개입으로 ‘타의적 자율’이나 ‘획일적 자율’의 측면이 드러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국가수준의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출발한 오늘의 시점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개념 정의는 지방교육자치가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91년 이후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는 뜨거운 쟁점이었고, ‘분리론’과 ‘통합론’의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하여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주장이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다[5]. 지방교육자치는 궁극적으로 “...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6]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측면을 포함해야만

한다.

그동안 다루어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의 법(김규태, 2002; 김용일, 2010; 표시열, 2010 등)과 제도(김홍주, 2001; 송기창, 2008; 정영수 외, 2009 등)를 다룬 연구가 많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헌법상의 교육제도 운영 원리에 대한 해석과 교육자치의 원리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연구자 간의 논란과 논쟁에 무게가 실려 있어 길고 긴 자기주장과 대결양상을 불러일으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생성과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원리와 구조를 비교분석하여 향후에 전개될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구조를 비교분석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란 수직적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생성 배경과 원리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양 국가의 지방교육자치의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지방교육자치의 배경과 원리

한국과 미국의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양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생성되고 변천되어 온 지방교육자치를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다.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도 주민과 교육자치를 작동하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이들의 관계 변화에 따른 기존 원리에 대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1. 지방교육자치의 생성과 변천

1.1 한국

우리나라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해방직후 미군정기에 시작되었다. 이미 분권적 교육행정을 경험한 미군정 관리들은 당시의 교육행정체제를 대단히 중앙집권적이고 내무행정에 교육행정이 완전히 예속되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교육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미군정은 '교육자치 3법'을 제정·공포하여 일반행정구역과 동일하나 독립성을 부여한 교육구를 두며, 교육구 내에서의 의결권과 집행권을 함께 갖는 교육구회를 설치하고, 교육재정 자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것은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된 「교육법」에 의해서였다. 교육법에서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실시의 지연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다만,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1952년 4월 23일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33호)을 근거로 동년 5월 24일 구교육위원회와 시교육위원회 위원이 선출되고 6월 4일에 구·시교육위원회를 발족함으로써 역사적인 교육자치제의 실현을 성취하였다. 그러나 제정 교육법을 통해 구현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관계 그리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의 구조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가 군지역에서는 의결기관, 시와 특별시지역에서는 합의제집행기관, 도지역과 중앙에서는 심의기관이었고, 교육감은 군지역에서는 집행기관, 시와 특별시지역에서는 사무장이었고, 도지역에는 교육감이 없었다. 양승실 외[8]에 따르면, 당시의 교육자치는 초등교육에 대한 교육자치이자 시·군단위 교육자치였다고 할 수 있다.

1949년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은 일반적으로 3~5단계로 논의되어 왔다. 3단계로 보는 시각은 첫 단계를 해방 후 교육자치가 도입되었던 때로부터 5.16 군사정권으로 중단되었던 시기로, 둘째 단계는 일반행정과 병행되었던 형식적인 지방교육자치 시기로, 그리고 셋째 단계는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1년 이후의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 시기로 설명한다. 반면에 다섯 단계로 보는 시

각은 준비기(1945.8.15~1952.4.23), 제1차 시행기(1952.4.23~1960.4.19), 시련기(1960.4.19~1964.1.6), 형식적 시행기(1964.1.6~1991.3.8), 그리고 제2차 시행기(1991.3.8~현재) 등으로 진술한다. 이에 비해 교육자치역시 통치구조의 변동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1, 2공화국기, 군사정권기, 제3·4공화국기, 제5공화국 이후로 기술하는 경우도 있으나 명칭만 다를 뿐 발전 단계를 구분하는 준거는 대동소이하다.

1.2 미국

미국은 역사적으로 민주성을 바탕으로 주민통제의 형태로 자치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각 주와 지역에 따라 교육자치가 시작된 경위도 다르다. 미국 북동부 지역은 일찍부터 타운(town) 자치의 전통이 있었고, 타운 미팅은 마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였으며, 이 회의에서 교육 문제를 포함한 타운의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당시 마을마다 지역공동체 학교(district schools)가 운영되었는데 지역 주민이 학교의 터를 닦고, 교사를 채용하고, 땀감을 대고, 교과서를 준비하는 등, 학교는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운영되었다. 18세기 들어서 주민들이 행정위원을 선출하여 행정 전반을 관장하게 되었으며, 공동체가 확대되면서 업무가 늘어나자 교원채용 등 교육행정 사무를 임시위원회에 위탁하게 되었다. 이 임시위원회가 사실상 교육행정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으며 이후 교육위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9].

뉴욕주 교육위원회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주 교육자치 기관으로 주의회에 의하여 1784년에 설치되었다. 당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한 주된 목적은 교육을 활성화하고 증진하며, 교육기관을 방문·감독하고, 관련 재산과 재원을 배분, 확대,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뉴욕주의 교육감 직책은 학교법(Common School Act)에 의하여 1812년에 미국 최초로 설치되었고, 주정부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이 임명되었다. 1821년 교육감의 지위가 일시적으로 폐지되고 주정부의 내무국장(Secretary of state)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으나, 1904년 교육감은 주교육위원회의 수석행정관으로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후 교육감에게 뉴욕주 교육청의 조직

을 구성하는 권한과 초·중등교육에 관한 감독권이 부여되었고, 고등교육으로 권한이 확대되어 현재 뉴욕주 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수반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10].

Ravitch[11] 그리고 Bloomfield와 Cooper[12]에 따르면, 미국 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은 지방집권화(centraliz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반복이었다. 즉 교육자치의 생성 초기에는 분권화되었으나 1900년대 이후 중앙집권화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다시 교육위원회를 정점으로 분권화되었으나, 2000년 이래 뉴욕시, 시카고시 및 워싱턴DC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권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13].

이상에서 논의된 한국과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생성과 변천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주민자치의 사회적 전통을 바탕으로 교육자치의 생성되어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면서 변천되었으나,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교육자치제도가 일방적으로 이식되어 실행되었고 변천과정에서는 소극적이고 경직적으로 반응하면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로 발전하였다.

2.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와 쟁점

2.1 한국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는 지방의 ‘교육을 위한’, ‘교육에 관한’ 교육행정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자 준수해야 할 구실을 함으로써 교육자치의 타당성, 합리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는 가치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로는 김종철[3]이 제시한 ① 지방분권, ② 주민통제, ③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또는 자주성 존중), ④ 전문적 관리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념적으로 지방분권과 주민통제는 민주성을 실현하는 원리이며, 자주성 존중과 전문적 관리는 전문성을 구현하는 원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의 원리는 지방의 교육행정은 중앙의 획일적이고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 창의적,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함으로써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주민통제의 원리는 지방의 교육사업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고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교육위원회 제도를 통하여 구현되고 있

다[14].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서 분리 또는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가능하도록 운영하려면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를 수반한다. 그리고 전문적 관리의 원리는 교육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원리의 구체적인 표현이 교육감제도로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별도로 교육감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15].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판결문에서 자주 언급하는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주의의 조화’(헌재 2000. 3. 30. 99헌바113)가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로 인용되기도 한다[16]. 법률적으로는 헌법 제31조의4에 규정된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로서 교육학계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행정학계에서는 이를 교사 내지 교육활동을 규율하는 원리라고 주장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적용되는 원리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17]. 이러한 관점과 해석의 차이는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의 오래된 논쟁의 불씨가 되어왔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의 전통적인 4가지 원리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용상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4].

2.2 미국

미국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는 크게 민주주의에 의거한 주민통제와 전문적 관리로 정리된다[2][18]. 사실, 주민통제와 전문적 관리의 원리는 장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주민통제(민주주의)의 원리는 주민이 주권자로서 직접 그리고 나중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는 점에서 교육자치의 제1원리로서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패한 정치세력이 이 원리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도 주민통제, 즉 아마추어 통제를 실현하게 되면 복잡다기한 행정사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전문적 관리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정치와 전문적 관리가 분리되면 주민

통제가 야기할 수 있는 부패정치를 추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통제 원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적 관리를 통한 전문가 독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전문적 관리는 교육행정의 비대화를 촉진하여 분권화보다는 집권화로 귀결되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는 주민통제와 전문적 관리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의 원칙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단계에서는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미국 교육자치의 원리로서 비당파성과 전문성 그리고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19]. 비당파성과 전문성의 원리는 진보주의 개혁(1890-1920)으로 형성된 것이며, 이는 교육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전문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비당파성은 교육위원 선거를 주지사 및 주의원 선거와 분리 실시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 관심을 저하시켜 저조한 투표율이라는 문제점을 낳았으며, 전문성은 교육행정의 절차와 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한편, 효과성과 책무성의 원리는 진보주의 개혁으로 형성된 원리의 부작용에 따른 결과로서 1980년대 미국 교육개혁과 더불어 부각되었다. 특히 이러한 원리는 1970년부터 시작된 재정압박이 작동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강조하였고, 주정부 즉 주지사에게 교육권한을 집중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20]. 그러나 지나친 재정 효율성과 교육권한의 집중화는 주정부의 표준화 시험위주의 교육을 과생시키고 주정부의 규제 활동을 인정한다는 비판을 가져왔으며, 엄격한 책무성은 학교 간의 경쟁을 심화하고 창의적 사고와 표현 등과 같은 고등 사고능력을 약화시킨다는 논쟁을 접화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한국과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살펴보면, 한국의 교육자치 원리가 교육자치 초기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한 소극적인 차원에서 형성되었다면, 미국의 교육자치 원리는 교육자치의 민주적 통제를 심화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III.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구조

여기서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란 수직적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집행기관인 교육청 수장으로서의 교육감과 의결기관의 교육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성격, 권한, 선출방식과 자격, 임기와 보수 측면을 분석한다[15][21].

1. 지방교육자치의 구조

1.1 한국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격동의 역사적 변천을 거쳐서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단위학교로 이어지는 수직적 차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와의 수평적 차원으로 연계된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다(그림 1).

지방의 교육자치 구조를 살펴보면 심의·의결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흡수·설치되어 있고, 독립제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이 별도로 있으며, 교육의원과 교육감 모두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지방자치와 달리 시·도 수준의 단일체제로 이루어졌고, 관련 사무의 범위는 유·초·중등학교와 사설 학원을 대상으로 하며 고등교육기관은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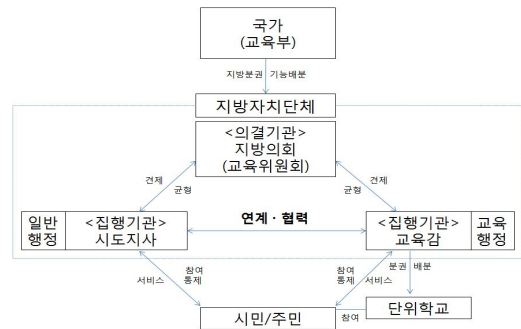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지방교육자치의 구조

반면에 지방자치는 지방교육자치와 달리 광역자치단

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개의 자치계층을 기본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의 구조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가 설치되어 있고 집행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며, 모두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동시에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구성원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22].

1.2 미국

미국에서는 교육에 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주정부에 있으며, 주정부에 따라 주지사로부터 주(州) 차원의 독립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차원의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는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 교육감(Chief state school officer), 교육청(State department of education)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는 우리나라와 달리 각 주정부가 지향하는 정치철학과 교육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그림 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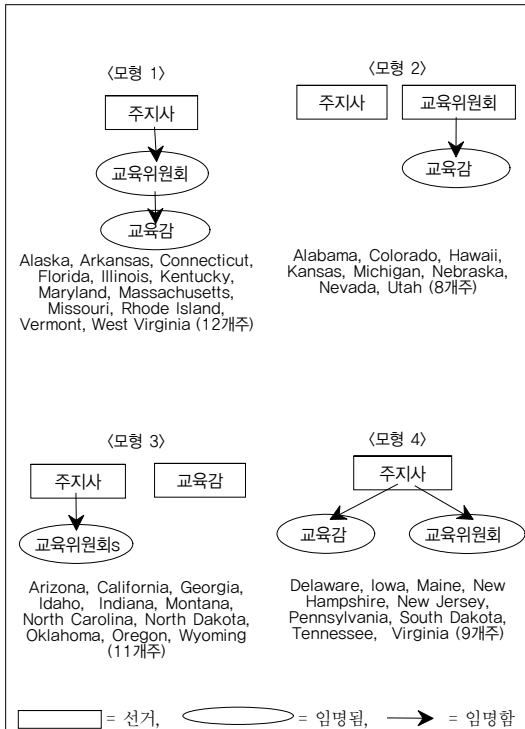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유형

미국의 지방교육자치는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4가지 기본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50개주 가운데 40개주에 이러한 모형이 적용된다[25]. <모형 1>은 주민이 선출한 주지사가 교육위원회를 임명하고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유형이며, <모형 2>는 주민이 주지사와 교육위원회를 선출하고 선출된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유형이다. <모형 3>은 주민이 주지사와 교육감을 선출하고 주지사가 교육위원회를 임명하는 유형이며, <모형 4>는 주민이 주지사만을 선출하고 주지사가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임명하는 유형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한국과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살펴보면, 수평적 차원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구조는 동일하나 그 관계의 유형은 미국이 한국보다 다양하며, 수직적 차원에서의 관계도 한국은 획일적이거나 미국은 매우 다각적인 것을 알 수 있다.

2. 지방교육자치의 구성요소

2.1 한국

우리나라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주요 구성원인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성격, 권한, 선출방식, 정당관련, 후보자격, 임기 및 보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주요 내용

구분	교육감	교육위원
성격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독립제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교육·학예에 대한 심사·의결기관
권한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다음사항을 심사·의결.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기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起債案) 5.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 와 처리 10. 그 밖에 법령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항	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선출 방식	주민직선제(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정당 관련	·정당의 후보 추천, 선거 관여 금지 ·후보자의 정당 지지반대, 지지추천 표방 금지	
후보 자격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 5년 이상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부 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 10년 이상
임기	4년, 3차 중임 가능	4년(일몰제)
보수	유급	

우선 성격면에서 교육감은 집행기관의 수장인 반면에, 교육위원회는 심사·의결기관이며,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그 권한이 나누어진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주민직선제로 선출되며, 이들에 대한 정당 관련 금지조항이 공히 적용되고 유급의 보수를 수령하며 임기는 4년이다. 양자 간의 큰 차이점은 후보자 자격의 기준인데, 교육위원의 후보자자격으로는 교육감보다 긴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요구된다.

2.2 미국

미국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주요 구성요소인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성격, 권한, 선출방식, 자격, 임기 및 보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우선 성격면에서 교육감은 감독 및 집행기관의 수장인 반면에, 교육위원회는 법적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양자 간의 관계는 교육감이 선출되느냐 아니면 임명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며,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에 대한 선출방식은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다양하다. 나아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에 관한 자격과 임기에 대한 사항도 각 주마다 상이하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유급의 보수가 책정되어 있지만, 교육위원은 대부분 무보수로 봉사한다. 19개주에서만 1일 평균 50달러 제공하고, 5개주에서는 실비만 제공할 뿐이다.

표 2.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주요 내용[23][25]

구분	교육감	교육위원회
성격	공교육체제에 관한 감독 및 집행기관	교육관련 법적 행정기관
권한	1. 주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수석행정관 2. 주교육청의 직원을 선발하는 권한 3. 교육규칙과 교육예산의 개선을 권고하는 권한 4. 교육법령의 준수를 보장하는 업무 5. 교육법을 설명·해석하는 권한 6. 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조정하는 권한 7. 주교육청의 수장으로써 당해 교육청을 통솔하는 권한	1. 교원 및 교육행정가의 자격기준 설정 2. 고등학교 졸업요건 결정 3. 주 학력검사와 평가 프로그램 설정 4. 지방교육구 인증 기준과 교원 및 교육행정을 위한 양성 프로그램 기준 설정 5. 주 교육기관의 재정 승인 및 감사 6. 주 교육프로그램의 행정을 각종 법규 규정
선출 방식	[그림 2] 참조	
자격	·나이: 4개주에서만 최소한의 연령으로 21세에서 30세를 규정함 ·자격증: 4개주에서만 교사자격증이나 교육행정가자격증을 요구함 ·교육경력: 20개주에서는 5년에서 10년의 교사경험이나 교육행정 경력을 요구함 ·교육수준: 11개주에서만 최소한 학사학위를 요구함	·나이: 제한이 없으며, 6개주에서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교육위원을 두고 있음 ·자격증: 6개주에서만 교사 또는 교육행정가를 교육위원의 일부에 포함함 ·교육경력: 4개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교육수준: 단지 2개주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을 요구함
임기	대부분 4년 임기이고, 캘리포니아 주만 중임을 규정하고 다른 주에서는 연임의 제한이 없음	22개주에서는 4년 임기(그 외에는 2년에서 9년)이고, 39개주에서 연임의 제한이 전혀 없음
보수	유급	유급보수 없음

이상에서 논의된 한국과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주요 구성요소를 성격, 권한, 선출방식, 정당관련성, 후보자격, 임기와 보수 영역에서 살펴보면, 양 국가 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4장을 참조).

IV. 한·미 지방교육자치의 비교와 시사점

1. 한·미 지방교육자치의 비교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생성 배경과 원리 그리고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의 4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지방교육자치는 미국의 특수한 주민자치의 전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생성되었다. 교육자치 200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서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구조는 교육위원회

와 교육감 그리고 교육청 조직으로 정착되었고, 전통적으로 무게 중심은 교육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 지방교육자치의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가 형성된 이후에 설치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이미 정착된 미국의 교육자치제도가 미군정기를 통해 도입되었다. 이식된 미국식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한국적 토양에서 출발부터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이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변천과정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현행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는 미국 지방교육자치의 어떤 유형과도 동일하지 않은 형태로 변형되었다.

둘째, 미국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는 미국의 역사와 맥락 속에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귀납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해 왔다. 특히 미국의 지방교육자치는 주민통제와 전문적 관리의 원칙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최근의 책무성과 효과성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는 1950년대 교육자치의 혼란상에 대한 경험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회변화에 소극적 또는 반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규범적 차원의 원리로 형성되어 고착되었다. 따라서 지방의 자치적 전통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가 강조되었으며, 지방분권보다는 주민통제의 원리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감의 위상은 교육전문가의 성격에서 정치가로서의 성격으로 바뀌었고 주민통제를 보완하던 전문적 관리의 원리는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주민자치 전통과 역사적 맥락은 지방교육자치의 구조 유형을 4가지 기본모형으로 발전시켰으며, 그 기본모형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은 주정부가 지향하는 정치철학과 교육의 목표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고 자치적 전통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획일적이고 단일한 지방교육자치의 구조 모형을 배태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변천과정은 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선출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주요 구성요소인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선출방식은 각 주마다 직선제, 간선제 또는 임명제로 다양하게 발전하여 존치되고 있다. Lunenburg와 Ornstein[26]에 의하면, 전문적 관리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직도 교육감은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선호되고 있으나(48%), 점차 주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민직선제를 통한 선출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미국의 교육위원회는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주민통제의 원리를 표방하고 있기에 임명되기보다는 선출되고 있으며,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교육감보다는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보수도 유급이 아닌 봉사직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선출방식은 직선제→임명제→간선제→직선제로 시계열적으로 다양하게 변천해 온 특징이 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자격기준을 보면 미국과 달리 교육위원의 전문성이 교육감보다 강화되고 있으나, 양자의 전문성은 사실상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보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육위원은 미국과 달리 유급으로 보상되고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2. 시사점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비교분석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와 역사성을 이해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잠재적 교육자원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6년과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는 분리형 교육자치의 구조에서 통합형 교육자치의 구조로 변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변천과정과 다양한 유형을 고려할 때, 어떠한 구조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지방교육의 목표, 지방의 행정관료 수준이나 형태,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나 태도 등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영수[27]는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과 교육감이 정치적 당파를 초월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교육에 대한 공동의 책무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는 전술한 4가지 원리가 기준이 되어 오랫동안 고수되어 왔으나, 지방교육자치의 생성과 변천과정 및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시대적으로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실,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과 새로운 원리에 대한 주장은 199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종재[28]는 전통적인 4가지 원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방분권’은 ‘다층적 분권’으로, ‘분리·독립의 폐쇄적 체제’에서 ‘지방과 협조체제’로의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1950년대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한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원리’는 당시 시대적 대응의 논리로 이해해야 하며 오늘날의 협력과 소통의 시대에서는 그 적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들어, 교육복지 개념의 등장, 평생학습사회의 이념 확산, 학교와 학교 밖 교육 기능의 연계와 호환의 필요성 대두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경계가 과거에 비해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교육의 지방분권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주권론의 결정요소로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운영이 요구된다[29].

현재 교육의 지방분권을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하나로 교육권한의 적체현상과 지역사회 학부모의 의사결정 참여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4]. 교육에 대한 권한이 지역사회의 하부구조로 흘러갈 때 교육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용이한 것은 자명하다. 참여란 관여(involve), 기여(contribution) 그리고 책임(responsibility)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지방교육자치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주민참여 교육위원회→교육장의 전문직 관리→지역대표 교육위원회 운영기를 거쳐 현재의 교육개혁기 교육위원회 운영기를 맞게 되었다. 전문직 관리의 문제점을 자각한

주민들은 종래의 주민통제 원리에 의한 교육자치의 원형에 가까운 방식으로 복권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자치의 구조는 주민통제의 원리에 의한 교육자치와 전문직 관리에 의한 교육자치를 균형적으로 지향하고 있다[30].

V.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교육자치 구조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생성과 변천과정 및 원리와 쟁점 그리고 그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고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 구조에 대한 역사적 경험도 다양한데, 현재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지방교육자치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다. 더욱이 미국의 다양한 지방교육자치 구조를 고려할 때 어떠한 구조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의 목표, 교육행정관료의 수준,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 등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30]에 의하면, 지방교육의 궁극적 발전을 목표로 지역사회 주민이 스스로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선택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지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감을 선임하는 것이 ‘자치’의 이념과 원리에 더 부합할 수 있다.

따라서 민선5기까지 성취된 지방교육자치의 역사를 감안하여 향후 민선6기~민선7기의 한시적인 기간을 설정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방교육자치의 다양한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 이를 평가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와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교육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그 목표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권한은 지방정부로 분권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은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잠재적 교육자원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나 교육감이 정치적 당과성을 초월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공동의 책무성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50년대 지방교육자치의 경험을 터로 하여 수립된 전통적인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대한 적합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얻은 지혜와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원리를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의 자치가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간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전통적인 원리를 주민통제와 전문적 관리의 2가지 원리로 압축할 수 있다. 단지, 이러한 원리의 상호작용과 시너지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3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Checks and balances)'가 필요하다. 박삼철[1]은 이를 조정과 협의의 원리로 제시하였고, 이차영[31]은 기본적인 '균형과 조화'로 표현하였다.

셋째, 지방의 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주민통제의 민주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으로 지방의 책임하에 있는 유·초·중등교육을 대상으로 지방이 창의적이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의 소비자 주권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성숙을 반영하는 교육거버넌스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교육거버넌스란 조직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참여 주체의 사회적 조정방식으로 정의되며,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워가는 방식이다. 즉 지방의 교육거버넌스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다양한 장면에서 누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을 통제하는가에 관한 의사결정

을 내리고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이며,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통치와 권력 작용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감파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투표 이외에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소환제, 주민예산참여제, 주민발의제 등의 제도적 방안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면서 학부모와 교사, 학교행정가가 조화롭게 지방교육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참고 문헌

- [1] 박삼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조정”, 지방교육행정체제 선진화 방안 학술세미나 자료집, pp.97-125, 2010.
- [2] 김용,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 교육발전연구, 제27권, 제1호, pp.89-110, 2011.
- [3]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p.102, 1978.
- [4] 김홍주, 고전, 김이경, *지방교육분권 성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
- [5] 이인희, 이혜정,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교육협력 발전방안 모색: 우수 교육협력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제33권, 제2호, pp.57-79, 2012.
-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 [7] 조성일, 안세근, *지방교육자치론: 이론과 실제*, 양서원, 1998.
- [8] 양승실, *지방교육 행·재정 체제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0.
- [9] 백종억, *주요국의 교육행정체제와 교육개혁 동향*, 교육과학사, 2002.
- [10] J. D. Folt, *History of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the State Education Department: 1784-1996*, Albany, NY: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the Board of Regents, 1996.

[11] D. Ravitch, *The Great School Wars: A History of the New York City Public Schools (3rd ed.)*, Baltimore, ML: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0.

[12] C. Bloomfield, S. Cooper, *Re-centralization or Strategic Management*,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98.

[13] L. Olson, More Power to Schools, *Education Week*, Vol.27, No.13, pp.23-26, 2007.

[14] 이종재, 이차영, 김용, 송경오, *한국교육행정론*, 교육과학사, 2012.

[15]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2012.

[16] 고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에 관한 논의: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및 제도 원리 관점”,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2호, pp.65-90, 2010.

[17] 이기우,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교육행정기관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지방자치학보*, 제13권, 제2호, pp.67-81, 2001.

[18] 이인희, “미국 뉴욕시 교육개혁 동향 분석: 교육행정체제 개혁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제26권, 제4호, pp.77-101, 2008.

[19] 황아란, 박수정, “미국 교육감 선출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6권, 제2호, pp.101-122, 2012.

[20] D. Doyle, B. Cooper, and R. Trachtman, *Taking Charge: State Action on School Reform in 1980s*, Indianapolis: Hudson Institute, 1991.

[21] 박수정, “지방교육자치의 연구 성과와 과제”, *교육연구논총*, 제33권, 제1호, pp.119-139, 2012.

[22] 고승희, “지방자치의식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호, pp.1-8, 2008.

[23] M. McCarthy, C. Langdon, and J. Olson, *State Education Governance Structure*,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1993.

[24] M. Kirst, *Turning Points: A History of American School Governance*. In N. Epstein (Ed.), *Who's In Charge Here? The Tangled Web of School Governance and Policy*,

pp.14-41,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25] M. Fulton, *State Notes: State Education Governance Model*. Denver: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2013(8).

[26] F. Lunenburg, A. Ornste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5th ed)*, Belmont, CA: The Thomson Cor., 2008.

[27] 정영수,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한계 극복”, *한국교육학회 뉴스레터*, 제46권, 제2호, pp.1-5, 2010.

[28] 이종재, “한국 지방교육의 진단과 발전과제”,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창립2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pp.11-34, 2010.

[29] 장성호,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실현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 pp.301-308, 2009.

[30] 김용, “교육자치의 운영제도: 지자체장, 교육감,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관계”, *교육비평*, 제27권, pp.10-23, 2010.

[31] 이차영,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기본원리와 운영구조: 주장의 끝과 이론의 시작”, *교육정치학연구*, 제4권, 제1호, pp.119-158, 1997.

저 자 소 개

이 인 회(In-Hoi Lee)

정희원



- 1985년 2월 : 고려대학교 사학과 (문학사)
 - 1997년 6월 : UTS(교육학석사)
 - 2007년 3월 : University of Bridgeport(교육학박사)
 - 2010년 10월 ~ 2012년 2월 : 영동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교육행정, 학교경영,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체제, 컨설팅장학

고 수 형(Su-Hyung Ko)

정회원



- 1988년 2월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2000년 8월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대학원 재학

<관심분야> : 교육자치, 교육행정,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체제